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기록관 수행의무 업무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영도구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,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매 5년마다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물을 관리하는 서고에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,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존기록물을 2년에 한 번씩 정수점검을 하여야 한다.

또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영도구(○○○○과)에서는 2014년, 2016년 기록관 보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, 2015년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

관리를 침해하였으며, 2014~2016년 기록관 보존서고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상태점검 및 정수점검을 정해진 기한 내 실시하지 않았고, 관할 처리과에 대하여 2014년 이후 기록관리 실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영도구청장은

[시정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 보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, 보존서고 기록물 정수점검, 관할 처리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시기 바라며,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기록관의 기본적인 수행의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(기록관 업무분장 포함)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.